

보험료지원
정부 50%

정부가 지원하는 믿음직한 보험!

메기 양식 재해보험

보험대상 축제식(지수식) 메기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것)

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여러분의 소중한 터전과 수산물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입니다.

양식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메기양식재해보험



▶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여러분의 양식장을 지켜드립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보험이 지킴이가 되어 드립니다.

▶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을 해드리며,
손해방지비용 등 각종 비용손해도 보상해 드립니다.

▶ 어업인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복구비) 한도가 2억원에서 2010년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고지원하고,
거대재해 발생시는 국가재보험제도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분담합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구 분	보험대상물	종 류
양식수산물	축제식(지수식) 메기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 (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축제식(지수식) 양식시설	축제식(지수식) 양식시설 일체

보험가입 방법

구 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충남(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내수면 양식업면허(신고증명서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메기를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	개별 양식장 단위 (한 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보험가입기간	1.1 ~ 6.30, 10.1 ~ 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면허·허가 등 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	가입선택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²⁾
주 계 약	의무가입	최대보유량 ¹⁾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 (단, 최저50% 이상)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 ³⁾ 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매 사고당 50만원

1)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 · 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2)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자기부담비율 : 20%, 25%, 30%, 35%, 40% 중 선택

4)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가입금액 및 자기부담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구 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 이내(25%)

보험료 할인

구 분	대 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고할인(5%)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 손해율에 따른 할인 · 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을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상안내

손해보상 대상기간

- ▶ **주계약 :**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 및 그 종료일 부터 14일 이내
- ▶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48시간(2일) 이내

지급보험금 계산(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만큼 지급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자기부담금
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만큼 지급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해당액) - 자기부담금

※ 손 해 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서,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간 어업생산통계 비계통 가격을 가장 평균한 가격의 90%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구 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메기)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 · 호우 · 홍수 · 대설 · 가뭄)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양식수산물(메기)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 · 호우 · 홍수 · 대설 · 가뭄)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 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 · 호우 · 홍수 · 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순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1억원(단,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20%,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주 계약 (1 억 원)			특 약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계	국 고 (50%)	자 담 분 (50%)	계	국 고 (50%)	자 담 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권역	충남 당진시 · 아산시	666	333	333	198	99	99	30	15	15
2권역	충남 홍성군 · 논산시 · 부여군 · 아산시 · 예산군 · 청양군	1,148	574	574	198	99	99	30	15	15
3권역	전북 전주시 · 익산시 · 김제시 · 정읍시 · 완주군 · 부안군 · 고창군	674	337	337	198	99	99	76	38	38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	내 용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강풍)에 대한 기상특보(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의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홍수	국토교통부에서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뭄	기상청에서 가뭄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물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로, 표준강수지수(6개월 SPI) 또는 파머지수(PDSI)가 -1.0 이하인 상태(심한가뭄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연락처

지 역	주 소	지역번호	TEL	FAX
경 인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항동7가)	032	890-4571~9	890-4674
강 원	(25549)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옥천동)	033	610-2551~6	641-4246
충 청	(3349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7 2층	041	939-9701~3	939-9720
전 북	(5408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29 2층(서흥남동)	063	463-0792, 463-0794	463-0769
전 남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BM타워 3층	062	950-2523~6	950-2519
경 북	(377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60 7층(한중빌딩)	054	256-7570~8	256-7574
경 남	(5149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수협청사2층(상남동)	055	210-6240~2	210-6208
부 산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 수협은행 4층(남포동6가)	051	250-2524~5, 250-2521	246-4943
제 주	(631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수로 84 4층(연동)	064	748-4107~8	746-4107

※ 보험가입 희망시 가까운 영업점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가입시 알아 두실 사항

●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계약체결 시에는 보유중인 양식수산물 · 양식시설물에 관한 사항, 타보험 가입사항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약서와 양식장원장 상의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셔야 하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체결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본회로 알려 주셔야<계약후 알릴의무(양식수산물변경기록지)>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정방법

- 이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보다 적게 가입하면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보험가입비율)로 보상하며, 사고 발생시의 보험가액보다 높게 가입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액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 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및 소멸

계약자는 계약성립 후 보험료의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됩니다.

● 보험료를 제때 못내셨을 때

제2회차 이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급제한 사유

- 이 보험에 대한 수험의 책임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는데부터 해당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기간에 대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드리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영업점 또는 전국 대표번호(☎1588-4119)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 한국소비자원 주소 :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두성리600)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분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사용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11-6)
대표전화 : (02) 2240-2114
F A X : (02) 2240-3050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4119